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영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0일
발 의 자 : 권영희, 이호대, 김화숙, 김제리,
김달호, 임종국, 김경우, 채인묵,
최 선, 강동길, 장인홍, 장상기,
유 용, 송명화, 최정순 의원
(15명)

1. 제안이유

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‘2년’에서 ‘1년’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많은 의원 및 예산재정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함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를
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
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, 그위원의 임기는
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원의 임기)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, <u>위원의 꺾위로 인하여 위촉된</u> <u>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(위원의 임기) ----- ---- <u>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